

●● 국내동향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133건의 선거보도 제재결정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사 심의를 위해 설치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가 최종 133건의 제재결정을 내렸다. 특히 형평성을 잃고 불공정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7건의 사과문 게재 결정이 내려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 제재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심의한 107건 중 사과문 게재 4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경고 11건, 주의 58건, 권고 33건을 의결하였으며, 후보자의 시정요구심의 23건은 사과문 게재 3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정정보도문 게재 2건, 경고 3건, 취하 7건, 기각 5건, 각하 1건을 의결했다. 또한 재심청구 3건은 기각 2건, 취하 1건으로 처리됐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잃고 특정 후보자를 연속해서 부각 보도하거나 비방 보도한 경우, 경선이나 선거에 임박하여 후보자의 반론 없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경우, 경쟁 중인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보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인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로 갈림이나 기고문을 게재하였거나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충분히 지키지 않은 보도, 특정 후보자의 명의를 적시하여 비방하는 의견광고에 대해서도 주의 및 경고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박기동 위원장은 “언론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벌어진 위반도 많았지만, 고의적으로 편파 보도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저버린 언론사도 적지 않았다”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 관련 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되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정보법학회,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최근 EU에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지자 국내에서도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3월 13일(화) 오후 6시 아세아타워빌딩 지하1층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잊혀질 권리’란 아직 학술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진 않았지만 ‘개인정보를 생성, 저장, 유통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삭제·수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토론회 주제발표의 사회는 정진섭 변호사가 맡았으며,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잊혀질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가 ‘우리나라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법정정책 검토’, 이재진 한양대 교수가 ‘인터넷언론의 오래된 기사와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회 속에 김일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구태언 행복마루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교수, 이규홍 사법연수원 교수, 한중호 NHN 이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본인이 원하지 않은 정보들이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근거로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지만,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을 다른 기본권보다 지나치게 우월한 지위에 두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역사의 기록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언론보도에 대한 잊혀질 권리는 그 논란이 매우 뜨겁다. EU의 개정안에서도 언론의 보도물과 의료 기록,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은 잊혀질 권리의 적용에

서 제외되었지만, 범죄기사의 경우 죄 값을 치른 후에도 해당 보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기에 잊혀질 권리와 보도의 자유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한다. 언론계는 그러한 범죄기사도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과거 기사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잊혀질 권리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기관에서도 이 같은 잊혀질 권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7일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포럼’ 발족식과 함께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EU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법제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도 과거 기사 삭제를 요청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같은 문제가 이첩되어 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철도공사, KTX 사고에 관해 언론사와 인터뷰한 노조원에 대한 손해소송 패소

대전지방법원(민사단독 강길연 판사)은 3월 22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원 정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단2899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길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뷰 내용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철도는 대량인원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1년 상반기에 탈선 사고 등 일련의 철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었는데, 그와 같은 상

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철도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가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 사고 당일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의 표현이 철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법인인 원고에 대해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표현은 결국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2011년 5월 8일 광명역 인근을 지나던 KTX 열차가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했지만 운행을 중지하지 않고 감속 운행했던 경위에 대해 MBC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정씨는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기관사가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열차를 운행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으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여옥, ‘표절의혹 보도’ 언론사 상대 손해소송 패소

‘국민생각’의 전여옥 의원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5월 18일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한 표절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대표 오현오 씨와 재일 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630)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전 의원이 유씨의 취재 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기사에서 전 의원을 지칭해 ‘거짓말 천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인 원고가 유 씨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쓴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으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여옥 의원은 1993년 발간한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해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유재순 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며 표절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2007년 7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2010년 2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 일본동향 ●●

한동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독팔소」 제목은 명예훼손 도쿄고법, 신문사 항소 기각

도쿄고등법원은 지난 4월 12일 「마루후지(丸富士)」라는 나가노시의 식품회사가 부적절한 기사제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산케이스포츠를 발행하는 산케이신문사와 스포츠닛뿐신문사를 상대로 1,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330만 엔의 지불을 명한 2011년 9월의 1심 나가노지법 판결을 지지, 두 신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문협회보(4월 24일자)에 의하면, 마루후지는 2008년 9월 중국에서 수입한 팔소(팔으로 만들어 떡속에 넣는 소)를 제과회사에 납품했는데 모란병(참쌀과 멥쌀을 섞어 만든 떡)을 만들려던 제과회사 종업원 2명이 입에 넣었다가 구토를 했다.

산케이스포츠(2008년 9월 21일자)와 스포츠닛뿐(2008년 9월 20, 22일자)은 교도통신의 배신(配信)기사에 「독팔소」라는 제목을 붙여 보도했다. 그러나 나가노현 경찰과 시보건소의 조사결과 팔소에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

해물질이 함유된 팔소를 납품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판단, 「사회적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인정했다.

최고재판소, 퍼블리시티권 인정 첫 판결

여성듀오 「핑크레이디」가 주간지 「조세이지신」에 무단으로 사진이 게재되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발행사인 「고분샤」를 상대로 낸 186만 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퍼블리시티권을 「저명인의 초상 등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최초의 판단을 내렸다고 신문협회보(2월 14일자)가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가 된 사진이 약 200쪽의 잡지 중 3쪽에 불과하고 흑백으로 적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사의 내용을 보충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 「핑크레이디」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주간지 「조세이지신」은 2007년 2월 13일 발매호에서 「핑크레이디」 노래의 안무를 이용한 다이어트법을 소개하면서 「고분샤」가 과거에 촬영한 두 사람의 흑백사진 14매를 사용했다. 「핑크레이디」측은 「핑크레이디의 사진을 다수 게재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힘을 이용하여 판매를 촉진,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보충의견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언급, 「① 브로마이드나 그라비아사진 등 초상 자체가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② 캐릭터 상품과 같이 상품의 차별화를 도모할 목적 ③ 상품의 광고」에서의 무단사용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다만 「저명인은 오락적인 관심을 포함하여 사회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물상이나 활동상황의 소개, 보도, 논평 등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도쿄지법 판결(2008년 7월)과 지재(知財)고법 판결

(2009년 8월)은 게재된 사진이 작고, 독자에게 안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 「핑크레이디」의 고객을 유인하는 힘을 이용하여 판매촉진을 노린 것은 아니라면서 청구를 기각했었다.

도쿄지법,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사진은 신속히 삭제해야... 야후의 책임 인정

1981년에 발생한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총격사건과 관련, 2008년 미국에서 체포되었다가 로스엔젤레스 시 경찰서 내에서 자살한 미우라 가즈요시(三浦和義·일본에서는 무죄확정)씨의 부인이 미우라씨의 체포·연행시의 사진이 뉴스사이트에 게재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기사를 배신(配信)한 산케이신문사와 사이트를 운영하는 야후(yaho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야후의 게재책임이 최초로 인정되었다.

신문협회보(2월 28일자)에 의하면, 두 회사는 지난 2월 20일 도쿄고법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유족의 명예감정 침해를 인정하여 보도기관으로부터 배신받은 기사와 사진에 대한 야후의 게재책임을 최초로 인정, 두 회사에 66만 엔의 지불을 명한 2011년 6월의 도쿄지법 판결이 확정되었다. 산케이 측은 「더 이상 다투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산케이는 2008년 10월, 1985년 9월에 구타사건으로 체포된 미우라씨의 수감 찬 모습의 사진 등을 미우라씨 사망의 관련기사로 배신하여 야후가 이를 사이트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구타사건에서의 체포나 유죄확정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고 있어 「사진을 공표할 필요성이 적다」고 지적, 「미우라씨에 대한 유족의 경애, 추모의 정을 침해한 바, 그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야후에 대해서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사진이 게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영국동향 ●●

방송사들 '역사적인' 법원 개혁에 환영

5월 9일 프레스가제트(PressGazette)는 영국법원에서 뉴스 촬영을 허용하는 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 보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오전 여왕의 연설에서 확인되었는데, 해당 조항은 범죄 및 법원에 관한 법률(Crime and Courts Bill)에 삽입될 것이다. 이 조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원에서 촬영을 금지하는 종전의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다만, 판사의 의견을 촬영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증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촬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 캠페인을 펼쳐왔던 BBC, ITN, Sky News는 다음과 같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오랫동안 법원 개혁을 지지해왔던 우리는 이 같은 역사적인 개혁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법정에 카메라가 들어가면, 더 많은 시민들이 사법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인식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 행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크리스 케언즈, 트위터 명예훼손소송에서 승리

3월 26일 프레스가제트(PressGazette)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크리켓 팀 주장을 역임했던 크리스 케언즈는 트위터에서 제기된 승부 조작 혐의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승소하여 9만 파운드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케언즈는 이러한 혐의로 인해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 ‘먼지’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62게임에서 200개의 위켓과 3,000개의 런을 동시에 달성했던 케언즈는 트웬티20 인도 프리미어 리그(IPL)의 전(前)회장 라리트 모디(Lalit Modi)가 지난 2010년 1월에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던 ‘분명한 혐의’

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모디는 런던 고등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빈 판사는 배심원이 없는 가운데 사건을 심리했다. 판사는 모디가 승부조작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변론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프로 크리켓 선수가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는 인격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선수는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된다. 이런 혐의는 테러나 성폭력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프로선수에게는 가장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판사는 크리켓 홈페이지 Cricinfo에서 모디의 트위터가 검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케언즈가 이의를 제기하자 Cricinfo는 해당 정보를 삭제했으며,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모디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케언즈의 혐의는 ‘완전한 허위’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지난 20년간 기록했던 케언즈의 업적이 물거품이 될 뻔 했다.

증인석에서 케언즈는 이렇게 말했다. : “모디의 주장은 제 인생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결혼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불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내 친구들, 그 중에는 저와 경쟁했던 선수들도 많은데, 이들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스포츠맨으로서 나의 진실성을 의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크리켓 게임에서 달성했던 모든 위업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2007년과 2008년, 케언즈는 찬디가르 라이온즈의 주장으로 인도 크리켓 리그(ICL)에 참가해 3라운드를 치렀다. 인도 크리켓 리그는 IPL이 도입되기 전에 잠깐 성행했던 대회였다. 모디는 2008년 3월에서 8월까지 펼쳐진 2번째 라운드와 같은 해 10월, 11월에 펼쳐진 3번째 라운드에 혐의를 제기했다.

판사는 모디에게 28일 이내에 40만 파운드의 배상금을 케언즈 측 변호사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판

사는 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항소를 허용했으나, 법적 책임에 대한 이의제기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디 측 변호사는 항소할 계획이다.

판사는 이번 사건이 명예훼손 소송 관광(libel tourism)이라는 모디 측 변호사들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결했다. 케언즈는 잉글랜드에서 7시즌 동안 크리켓 경기에 출전했기 때문이다. 8일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한 번도 증언하지 않았던 모디는 2010년 중순부터 잉글랜드에서 살고 있다.

판사는 케언즈가 제출한 증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믿을 수 없다’는 모디 측 변호사인 로널드 스웨이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오랫동안 케언즈의 경기, 수입, 사생활에 대해 집요하고 가끔은 공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판사는 크리켓 선수 고라브 굽타, 라제시 샤르마, 테진더 팔 싱이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고, 아미트 우니얄과 러브 아블리쉬가 제출한 증거는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으며, 카란비어 싱이 제시한 증거는 모디의 주장을 뒷받침하기가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모디 측 변호사들이 케언즈를 향해 ‘맹렬하고 집요한’ 공격을 개시했고,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스웨이트는 최후 변론에서 ‘거짓말쟁이’,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24번이나 사용했다. 판사는 이러한 연유로 처음에 책정했던 7만5천 파운드에서 9만 파운드로 배상금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PCC, 물담배 사진에 대한 사생활 침해 주장 기각

4월 5일 프레스가제트(PressGazette) 보도에 따르면, PCC가 카페에서 후카(hookah)를 피고 있는 사진과 관련해, 글래스고 이브닝 타임즈를 대상으로 제기된 사생활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원고는 글래스고 시 의회에 관한 기사에 실린 2장의 사진에 등장했는데, 해당 기사는 ‘후카(Hookah)을 내던져라!’는 헤드라인을 통해 시샤(shisha) 카페를 단속하고 있는 글래스

고 시의회의 흡연 금지 조치를 조롱했다. 원고는 이브닝 타임즈의 사진기자로부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누군지 식별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주장했다.

PCC는 지역 카페에서 촬영된 이 사진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담배 파이프이지만, 원고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뉴스퀘스트 산하의 일간지 글래스고 이브닝 타임즈는 2011년 10월 7일자 신문에 기재된 이 사진이 편집자 보도 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사진기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에 따르면 사진기자가 ‘연구’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며 신문에 게재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사진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인격과 진실성을 의심받았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사진기자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변호했는데, 사진기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촬영 목적을 분명히 밝혔고, 몇몇 사람들은 촬영되지 않았지만, 원고는 사진에 남아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기자는 사진의 일차적인 초점은 원고의 신체가 아니라 후카(hookah) 파이프였으며, 원고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문사는 사진기자가 ‘꽤 많은 수의’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사진 촬영을 허락 받았고 신문에 게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카페 주인의 증언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 후, 신문사는 ‘특수하고 어려운 사안’으로 간주하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PCC는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사진 촬영을 허용했는데 신원이 확인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사생활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PCC는 공개되는 사진에서 원고가 식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사진기자가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PCC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위원회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

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했다면 좋았을 것이나, 원고가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기자의 발언으로 이 같은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했다. 본 위원회는 대중에 공개되는 사진을 촬영할 때, 특히 사적인 공간을 촬영할 때는 완전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일깨워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글래스고 이브닝 타임즈를 비롯한 간행물 사업자들이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촬영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보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언론 왓치독은 사진기자가 ‘연구’ 목적을 위한 촬영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은 ‘모순되는 증거’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는 사진기자가 제10조(허위진술 또는 속임수에 의한 장물 취득에 관한 법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CC는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혔고, 사진 촬영 의도에 관한 증거도 모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PCC 고충 처리 및 출판 지원 서비스 담당자 샤를로테 드와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은 본 위원회에게도 특수하고 어려운 사안이었고,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특히 사적인 공간에서 특정 개인을 촬영할 때는 ‘완전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 미국동향 ●●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아

CNN머니 인터넷판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이 페이스북의 ‘좋아요’ 클릭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

한다고 판결했다.

2009년 버지니아주 햄프턴의 보안관실에서 근무 하던 바비 블랜드 외 4명은 당시 상관이던 B.J. 로버츠 보안관이 보안관 재선을 놓고 경합하고 있던 도중 상대 후보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좋아요'를 클릭했다. 이후 로버츠가 재선에 성공하고 예산감축,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상대 후보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클릭한 것 때문에 해고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면 당연히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겠지만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좋아요'는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페이스북에 있는 실제 게시글까지 라고 판단했다.

시카고법원, 법정 내 트위터 사용 금지 갈등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제니퍼 허드슨의 모친과 오빠, 조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드슨의 전 형부 벨포어에 대한 재판 법정에서 담당 판사가 트위터를 비롯한 다른 SNS 이용을 금지하면서 판사들과 기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법정 내의 트위터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트위터 허용 문제는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Virginia, ACLU) 일리노이주 지부 에드 윌카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로 기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트위터나 SNS의 이용은 과거부터 해왔던 정보 수집과 전달이 21세기적인 형태로 바뀐 것뿐이기에 판사들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판사 찰스 번스의 대변인은 트위터로 인해 법정의 위엄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들은 사건의 증거에 관한 트위터가 사건

진행 중에 게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이런 판사들의 우려에 대해 기자들은 자신들도 법정의 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이를 이용금지하기보다는 재판부가 트위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 등의 조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프랑스로향 ●●

김이정(서강대 프랑스로향학 강사)

EU법원, 사진 초상권보호에 관한 선결문제 검토

레지프레스스(Legipresse) 1월호에 따르면, EU법원은 한 사진가와 다섯 언론사와의 법정 다툼(오스트리아 1심 법원)을 계기로 다음의 선결문제들을 검토했다. 발단은 이 다섯 언론사가 사진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유괴되기 전에 찍은 어린이 나타샤 캄푸쉬의 사진들을 사용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법정 투쟁을 검토하는 오스트리아의 1심 법원은 EU법원에게, EU법이 제한적으로 예술작품이 될 수도 있는 초상 사진에 최소한의 보호를 부여하는지 물었다. 또한 범죄 수사가 필요한 경우 어떤 조건에서 이런 사진들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언론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도 알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보호 받는 작품이 어떤 조건들에서 게재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EU법원은 "1993년 10월 29일에 개정된 저작권 보호 기간과 그와 유사한 몇몇 권리들의 조정과 관계된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서 93/98/CEE의 6조에 따르면 초상 사진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초상 사진이 저작자가 사진을 찍을 때 자신의 개성을 반영하고 자신이 임의적이면서 창조적인 선택으로 표현하는 지적 창조물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러하다. 이것은 소송사건의 경우마다 자국의 법원이 확

인해야 할 부분이다. 소송 중인 초상 사진이 작품성을 띤다는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사진 작품을 포함한 다른 모든 작품이 받는 만큼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2001년 5월 22일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서 2001/29/CE의 5조 3항 e)호는 (치안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를 지정한) 5항에서 언론사 같은 미디어는 치안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작품을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명수배자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제한적으로 기여할 경우만은 예외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결정권은 권한이 있고 치안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결정되거나 이행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이 결정은 해당 기관들이 취한 조치들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해당 기관과의 동의와 협조로 이뤄져야 한다. 수사를 목적으로 사진을 게재하라는 치안 당국의 구체적이고 단호한 실제 요청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한 작품이나 보호 받는 또 다른 대상을 게재한 언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문학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런 조항의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지침서 2001/29의 5조 3항 d)호는 이 지침서의 5조 5항에 의거하여 읽혀지는 것으로, 이것의 적용은 게재된 작품이나 보호 받는 다른 대상의 저작자의 이름이나 실연자의 이름을 포함한 출처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의무보다 하위라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침서 2001/29의 5조 3항 e)호를 적용하여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출처만 표시되었다면 해당 의무가 지켜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의해
비밀성이 있는 정보가 폭로되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레지프레스(Legipresse) 4월호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은 스포츠 일간지에 세계적인 육상선수의 혈액 검사 결과를 기사로 작성한 기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기사에서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52%, 헤모글로빈 수치가 17.2그램이면 의심스러운 수치가 해당한다”고 썼다. 그는 특히 직업상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조항으로 경범죄판소에 소환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의료진만이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직업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보호받는 의료자료라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진료하는 모든 사람은 사생활 보호권과 사생활에 관계된 정보들의 비밀유지권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폭로하는 것은 직업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걸 환기시켰다. 따라서 기사에서 범법행위로 취한, 이런 비밀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은닉”죄의 특성을 띤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기사는 상고를 했고, 프랑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593조와 더불어, 형법 226-13과 321-1조에 의거하여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비밀성이 있는 정보가 폭로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피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출판물 배급업자는 출판물의 편집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어

레지프레스(Legipresse) 4월호에 따르면, 낭페르 지방법원은 동의 없이 촬영되고 게재된 사진이 포함된 출판물의 유통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와 유럽인권조약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근본적 자유로의 당연한 귀결은 출판물의 유통 시 자유의 원칙과 제목처리에 있어서 객관성과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1) 의료진을 통해 받을 수 밖에 없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진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은닉

것을 전제로 한다.

여배우이자 모델인 한 여성이 자신의 동의 없이 그녀를 찍은 사진 몇 장이 포함된 피플지의 다운로드 판매를 제안한 어느 배급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그녀의 사진을 실은 해당 잡지 표지와 <다이어트하지 않고도 더 행복해요>라는 기사 제목이 문제가 되었다. 그녀는 민법 9조에 근거하여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여배우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유통 수단과 매체의 방식이 무엇이던 간에 배급업자가 판매되는 출판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며, 차별 없이 출판물의 제공과 판매를 보장하는 것이 출판물 배급업자의 의무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급업자에게 부과된 이 의무로 인해 편집 내용에 대해서 배급업자는 모든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모든 책임은 발행인에게 주어진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 중인 피고(배급업자)와 잡지 발행인 사이의 계약으로부터 피고가 제공된 디지털 출판물의 상품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인정했다. 이 디지털 출판물은 오프라인에서의 열람을 위해 대중이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피고가 중개인의 자격으로 개입하므로 내용 편집에 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계약에 명백하게 명기되어 있다. 또한 그 잡지의 같은 호의 '종이' 판에 대해 동 법원이 내린 이전 판결은 '잡지 발행인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였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 해외통신원 보고 1 ●●

송동현 통신원

(Goldsmiths College(런던) Media & Communications 박사과정)

PCC 폐지 확정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는 지난 5월 8일 기관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21년 동안 영국 언론사의 자율규제를 지탱해왔던 PCC의 폐지는 폰해킹 스캔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기인한다. PCC의 폐지는 놀랍지도 않고, 논란의 여지도 없으며,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이 여론의 중론이다. PCC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레버슨 청문회가 종료되기 이전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PCC는 자산/부채 및 임직원들을 대체기관에 위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양작업 중 PCC는 기존의 임무를 계속 담당할 것이라고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바 있다.

현 이양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PCC 위원장 로드 헌트는 PCC를 대체할 새로운 기관은 두 개의 분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첫 번째 분과는 불만사항 및 중재를 할 수 있는 분과이고 두 번째는 편집인 윤리 표준 및 규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업무를 분리하여 담당할 수 있는 분과이다. 두 개의 분과는 분과에서 독립된 위원장이 감독할 것이다.

불만사항 및 중재담당 분과는 현 PCC가 담당하고 있는 조정·중재업무를 승계한다. 중요한 사항은 새로운 중재 담당 분과가 중재기관의 개입 이전 신문사들에게 직접 불만을 처리할 것을 독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새 기구는 또한 중재결정관련 보상액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윤리 표준 및 규정 준수와 관련한 분과는 신문사의 규정위반의 사례가 발견될 시 본격적으로 임무를 실행하게 된다. 분과 내에는 이와 관련한 전문 패널이 위임되어 문제발생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규정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방식이 채택될 것이다.

행정조직관련 소규모 경영 위원회나 재단 이사회에 권한을 일임할 예정이고, 신문업계 수석급 임원이 경영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의 자체 규제를 위한 방편으로 각각의 신문 출판사들의 규정준수 감시를 위한 담당인원을 임명하여 추후 불거질 수 있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신문 출판사를 담당하는 내부 인사들은 1년 단위로 철저한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 명시하였다.

유의미한 사항은 모든 신문사들은 새로운 언론 중재기관과 법령에 의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계약 아래 새로운 중재기관은 신문사가 언론사로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어겼을 시에 다른 규제기관과 함께 신문사를 고소 및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중재기관은 그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빨 없는 호랑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PCC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모든 계획은 레버슨 청문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수정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PCC가 기관 폐지 시기를 레버슨 청문회가 끝나기 이전에 확정/공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PCC의 레버슨 청문회 이전 확정/공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PCC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언론중재/규제 변화에 대한 방향을 선점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즉, 이러한 조속한 결정은 해킹사건 관련 많은 비난을 받은 PCC의 무능력과 언론사의 자율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가 PCC의 개혁을 주도하려는 상황에 대한 신문업계의 자구책이라는 해석과 같은 맥락이다.

공적규제로의 언론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PCC의 위원장인 헨트 경의 뉴스/신문 인터뷰에서 잘 드러나는데, 헨트 경은 이월 말 스카이 뉴스를 통해 새로운 기구로 전환될 것이라는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하며 "우리는 다양한 측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승인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율규제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장기간 동안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며 존재 가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대체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약 국회가 개입된다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레버슨 청문회에서 가장 큰 논쟁을 야기했던 명예훼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령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2014년까지도 적절한 대체기구를 설립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해외통신원 보고 2 ●●

레버슨 청문회 3부 시작

지난 4월 23일부터 레버슨 청문회 3부가 시작되었다. 청문회 1부는 언론과 공중의 관계, 2부는 언론과 경찰의 관계를 주요 사안으로 다루었으며, 이번 3부는 언론과 정치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3부의 핵심사항은 언론과 정치계의 폰해킹 관련 유착비리를 파헤치는데 있다. 이와 관련, 해킹사건의 중심인물인 루퍼드 머독, 레베카 브룩 및 주요 정치계 인사 증인으로 소환되어 조사관의 질의에 응했으며, 그들의 답변은 얼마나 영국 신문업계와 정치계가 밀접하게 유착하여 밀실행정을 펼쳤는지를 재증명하여 영국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는 각부 장관들이 어느 정도 뉴스인터내셔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하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언론과 정치의 유착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계기는 4월 24일 레버슨 청문회에서 정부관료와 뉴스코퍼레이션 간부 간에 오고 간 이메일이 쟁점화되면서 부터이다. 그들의 이메일은 정부의 BSkyB의 주식 입찰관련 정부 내부 정보가 현 문화부장관 제레미 헨트의 보좌관인 아담 스미스에 의해 뉴스코퍼레이션의 언론/공보 디렉터인 프레드릭 미셀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문제는 이 정보에는 사업적으로 악용될 정부 비밀 정보도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제임스 머독은 청문회에서 이러한 메일 관련 사항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확히 읽어 본 기억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청문회 다음날인 25일 아담 스미스는 보직에서 사임했다. 같은 날 제레미 헨트 장관은 보좌관인 스미스에게 문화부와 뉴스코퍼레이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을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헨트 장관은 아담 스미스와 뉴스코퍼레이션 사이에 오고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증언하며, 스미스가 뉴스코퍼레이션 간부와 주고받은 이메일의 양과 내용은 부적절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5월 25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아담 스미스는 헛트 장관과 논란이 불거진 4월 24일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며, 헛트 장관이 스미스의 직책 유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언급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헛트 장관이 뉴스코퍼레이션의 BSkyB의 주식 입찰에 깊게 관여하였다는 사실의 유추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와 더불어 헛트 장관이 뉴스코퍼레이션에 어떻게 폰해킹 스캔들을 처리할지를 문의하는 163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이 밝혀짐에 따라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며 정치스캔들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레버슨 청문회 3부에서 확실히 된 또 하나의 진실은 전 뉴스인터내셔널 간부이자 해킹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레베카 브룩이 오래 전부터 현 수상인 데이빗 카메론과 사적으로 많은 교류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청문회 참석 중에 증언한 답변 중, 카메론이 그녀에게 'LOL' 라는 약자를 원래 의미인 'Laugh out Loud (크게 웃는다)' 가 아닌 'Lots of Love(애정을 담아)' 로 착각하여 종종 문자로 쓰곤 했다는 것에 대해 증언한 사실은 이후 계속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해킹 스캔들 및 레버슨 청문회로 인해 카메론 정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5월 26일 카메론 수상의 언론담당 비서인 가비 버틴(Gabby Bertin)은 뉴스코퍼레이션의 프레드릭 미셀과 뉴스오브더월드지의 해킹사건이 명백해진 지난해 여름 다수의 문자 교신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버틴은 또한 레베카 브룩과 연락을 취해 그녀를 도와줄 것이며 뉴스오브더월드지의 폐간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레버슨 청문회 3부는 단지 언론과 정치계의 유착관계만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적 법적 행동의 초석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4월 23일 청문회에서 스카이뉴스 수석 존 라일리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죽음을 위장했다가 적발된 다윈부부의 이메일을

2007년 해킹하여, 스카이뉴스 채널 소스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이는 컴퓨터 오용금지법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와 형평성 관련 형법에도 저촉이 된다고 판단하여 영국 규제기관인 Ofcom은 같은날 스카이뉴스에 대해 대대적 조사를 벌일 것이라 공표했다. 또한 검찰은 2011년 5월 27일 폐간된 뉴스오브더월드의 편집장인 레베카 브룩을 포함해 폰해킹 관련 6명을 기소/체포하기로 공식 발표하였다.

레버슨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나 관련 정치인들은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안들에 관하여 정확히 그 사안들에 관여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회피할 수는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미디어를 이끈 사업가로서의 또는 정책을 담당할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해외통신원 단신 1 ●●

데이빗 카메론, 비공개 법정 심리와 인터넷 감시 확대 법안 제안

카메론 정부는 인터넷 감시상황을 확대하고 기밀 정보에 관련된 민사사건의 비공개 법정심리를 허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부총리인 닉 크레그를 포함한 자유주의자들은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재판소가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오직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일임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데이빗 카메론과 법무비서인 켄 클라크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개정안을 모두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클라크에 따르면, 카메론은 몇몇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서 불명확한 판결이 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공개 심리는 소수의 사건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부총리 닉 크레그는 비공개 심의 제

도가 7/7런던 폭탄 투척 사건 같은 조사로까지 확장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클라크는 그 같은 조사들은 다르게 취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당은 다가오는 의회 회의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메일 감시 상태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내무 장관 감독 하에 진행 중에 있다. 카메론은 이 두 사안이 모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님을 강조하며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카메론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언론에 피력하고 있다: “현재 빠르게 발달하는 테크놀로지로 인해 우리의 방어력에는 거대한 틈이 생겼다. 이제 시민들은 약정된 전화선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전화를 한다. 우리의 방어력에는 또 다른 틈이 있는데 그것은, 때로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법원에서 기밀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카메론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야기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재판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인권위원회(JCHR)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인권위원회는 정부가 개정안의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원회는 현재의 법원 시스템이 국가 안보를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없는 비논리적 주장이라고 보고했다.

●● 해외통신원 단신 2 ●●

타임즈, ‘레이놀즈 특권’에 의해 정당성 획득

2012년 3월 21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경사 플러드가 타임즈 뉴스페이퍼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레버슨 청문회로 인해 언

론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는 시기에 내려진 이 판결은 언론인의 사기를 조금이나마 진작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분쟁은 2006년에 타임즈 뉴스페이퍼가 영국 경찰의 비리와 부패 상황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타임즈는 영국 경찰청의 범죄인 본국 송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사 게리 플러드가 ISC Global (UK)에게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본국 송환과 관련된 기밀사항을 폭로하는 댓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던 것이다. 타임즈는 플러드가 금품수수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상황을 상세히 게재했다.

하지만 타임즈에 기사가 게재된 몇 달 뒤에 플러드의 금품 수수 비리에 관해 조사를 실시했던 기관에서 그의 혐의를 증명할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 플러드는 타임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긴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플러드가 아닌 타임즈의 손을 들어 주었다. 비록 추후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공공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건일 경우 혐의가 의심될 때, 언론은 이를 보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레이놀즈 특권’에 의거하여 타임즈의 보도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몇 가지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과연 언론이 한 개인의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검증 절차없이 보도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인가, 아니면 언론의 권력 남용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타임즈가 플러드의 무혐의에 대한 공식 발표에 관한 기사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기사를 배제시켰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이놀즈 특권이 적용될 수 없기에 일정 부분 타임즈가 플러드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분분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플러드의 무혐의 처리가 진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여전히 타임즈 기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가지 사건을 뒤로하고 사건을 담당했던 모세 판사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한 사람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는 한 사람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건을 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삼는 언론사와 그것을 즐기는 독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평범한 진실보다는 선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사건에 열광하는 독자의 심리와 그 심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이기적인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는 그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